

## 제목 : 『하나 기업어음 특약』 이용약관

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『하나 기업어음 특약』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시행 예정일 : 2022.03.24
- 개정 약관명 : 하나 기업어음 특약
- 기존손님 적용여부 : 적용

현 행	개 정 (안)	개정사유
<p><b>제 1 조 통장에 의한 거래</b></p> <p>은행과의 어음매출 거래는 통장에 의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<u>매입하신</u> 어음실물은 은행이 보관하기로 합니다.</p>	<p><b>제 1 조 통장에 의한 거래</b></p> <p>은행과의 어음매출 거래는 통장에 의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<u>매입한</u> 어음실물은 은행이 보관하기로 한다.</p>	문구수정
<p><b>제 2 조 입금계좌 지정</b></p> <p>은행에 어음 실물을 <u>맡기신</u> 경우에는 <u>어음만기일에</u> 어음금액을 신규시 지정하신 예금계좌에 자동 입금하여 드리고 입금된 금액에 <u>대하여는 해당</u> 예금의 약정이율로 이자를 지급하여 드립니다.</p>	<p><b>제 2 조 입금계좌 지정</b></p> <p>은행에 어음 실물을 <u>맡긴</u> 경우에는 <u>어음만기일에</u> 어음금액을 신규시 지정한 예금계좌에 자동 입금하고 입금된 금액은 해당 예금의 약정이율로 이자를 지급한다.</p>	문구수정
<p><b>제 3 조 추심료부담</b></p> <p>은행에 보관 의뢰한 매입어음을 추심하는데 비용이 드는 경우는 은행이 추심료를 부담하겠습니다.</p>	<p><b>제 3 조 추심료부담</b></p> <p>은행에 보관 의뢰한 매입어음을 추심할 때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은행이 추심료를 부담한다.</p>	문구수정

<p><b>제 4 조 어음실물의교부</b></p> <p>매입인께서 매입하신 어음실물을 직접가져가고자 하실 경우에는 어음금액 전액을 매입하신 경우에 한해 은행은 어음실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.</p>	<p><b>제 4 조 어음실물의교부</b></p> <p>매입인이 매입한 어음실물을 직접 가져가고자 할 경우에는 어음금액 전액을 매입한 경우에 한해 은행은 어음실물을 교부할 수 있다.</p>	문구수정
<p><b>제 5 조 어음실물교부에 따른 면책</b></p> <p>① 매입인께서 매입하신 어음실물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직접 보관하시는 중 매입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</p> <p>② 매입인께서 직접 보관하시고 있는 매입어음을 은행에 추심의뢰하신 경우 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어음금액이 입금되더라도 은행은 지연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 그러나 은행의 잘못으로 입금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당초의 매출이자로 계산하여 지급하겠습니다.</p>	<p><b>제 5 조 어음실물교부에 따른 면책</b></p> <p>① 매입인이 매입한 어음실물을 은행에 맡기지 않고 직접 보관하던 중 매입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p> <p>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.</p> <p>② 매입인이 직접 보관하고 있는 매입어음을 은행에 추심의뢰한 경우 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어음금액이 입금되더라도 은행은 지연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한다. 그러나 은행의 잘못으로 입금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당초의 매출이자로 계산하여 지급한다.</p>	<p>문구수정</p> <p>문구추가</p> <p>문구수정</p>
<p><b>제 6 조 어음의부도</b></p> <p>매입하신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은행이 어음금액을 지급하겠습니다.</p>	<p><b>제 6 조 어음의부도</b></p> <p>매입한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은행이 어음금액을 지급한다.</p>	문구수정

<p><b>제 7 조 사고등의 신고</b></p> <p>어음거래통장이나 거래인감 또는 매입어음을 분실•도난•멸실 등으로  <u>잃으신</u> 때에는 유선이나 서면으로 가까운 <u>저희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</u>      이 신고가 있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은행은  <u>책임지지아니합니다.</u></p>	<p><b>제 7 조 사고등의 신고</b></p> <p>어음거래통장이나 거래인감 또는 매입어음을 분실•도난•멸실 등으로  <u>잃어버린</u> 때에는 유선이나 서면으로 가까운 <u>하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.</u>      이 신고가 있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은행은 책임지지 <u>않는다.</u>  <u>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.</u></p>	<p>문구수정</p> <p>문구추가</p>
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